

##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 목 차

-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발의의안.....2면
-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검토보고서.....74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6. 7.(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익봉의원외6인】
2.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4. 5. .
발의자 : 장익봉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여노연 이화숙 의원

## 1. 주 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b>참 고</b>	<b>관련 근거</b>
------------	--------------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 성주군의회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 1. 개정이유

금수면 주민들의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 현‘금수면’의 명칭을‘금수강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리의 명칭 뿐만 아니라 읍·면의 명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  
(제1조, 제2조)

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 행정구역 명칭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별표)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 5. 7.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4421(2024. 4. 15.))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18426(2024. 4. 9.))

바. 비용추계서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리의 명칭과 구역”을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리의 명칭구역)”을 “(명칭과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를 “읍·면·리”로 한다.

별표 면명란 중 “금수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 명	리 명 칭	구 역
금수강산면 (중전 금수면)	광 산 리	종래 광산리 일원
	명 천 리	종래 명천리 일원
	어 은 리	종래 어은리 일원
	후 평 리	종래 후평리 일원
	봉 두 리	종래 봉두리 일원
	무 학 리	종래 무학리 일원
	영 천 리	종래 영천리 일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별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

②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

③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

④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의 사무소”로 한다.

제2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의 사무소”로 한다.

별표 중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비고 (관할구역)
금수강산면 행정복지센터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883	금수강산면 전역

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성주군 금수지소란과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금수강산지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2	금수강산면 일원
금 수 강 산 면 무학보건진료소	성주군 금수강산면 무학3길 24	후평1,2리, 봉두1,2리, 무학1,2리, 영천리

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설명란 중 ‘금수문화공원’을 ‘금수강산문화공원’으로 한다.

⑦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수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수강산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u>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리의 명칭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작성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리 명 칭 과 구 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면 명</th> <th style="width: 20%;">리 명 칭</th> <th style="width: 65%;">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u>금수면</u></td> <td>광산리</td> <td>종래 광산리 일원</td> </tr> <tr> <td>명천리</td> <td>종래 명천리 일원</td> </tr> <tr> <td>어은리</td> <td>종래 어은리 일원</td> </tr> <tr> <td>후평리</td> <td>종래 후평리 일원</td> </tr> <tr> <td>봉두리</td> <td>종래 봉두리 일원</td> </tr> <tr> <td>무학리</td> <td>종래 무학리 일원</td> </tr> <tr> <td>영천리</td> <td>종래 영천리 일원</td> </tr> </tbody> </table>	면 명	리 명 칭	구 역	<u>금수면</u>	광산리	종래 광산리 일원	명천리	종래 명천리 일원	어은리	종래 어은리 일원	후평리	종래 후평리 일원	봉두리	종래 봉두리 일원	무학리	종래 무학리 일원	영천리	종래 영천리 일원	<p><u>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리 ----- ----.</p> <p>제2조(명칭과 구역) <u>읍·면·리</u>----- -----.</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b>리 명 칭 과 구 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면 명</th> <th style="width: 20%;">리 명 칭</th> <th style="width: 65%;">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u>금수강산면</u></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면 명	리 명 칭	구 역	<u>금수강산면</u>	-----	-----		-----	-----		-----	-----		-----	-----		-----	-----		-----	-----
면 명	리 명 칭	구 역																																						
<u>금수면</u>	광산리	종래 광산리 일원																																						
	명천리	종래 명천리 일원																																						
	어은리	종래 어은리 일원																																						
	후평리	종래 후평리 일원																																						
	봉두리	종래 봉두리 일원																																						
	무학리	종래 무학리 일원																																						
영천리	종래 영천리 일원																																							
면 명	리 명 칭	구 역																																						
<u>금수강산면</u>	-----	-----																																						
	-----	-----																																						
	-----	-----																																						
	-----	-----																																						
	-----	-----																																						
	-----	-----																																						

성주군 반 설치 조례 [별표]

현					개						
행					정						
안					안						
읍면별	리명	분리면	반명칭	구역	읍면별	리명	분리면	반명칭	구역		
금수면	계		37		금수강산면	계		37			
	광산리	광산1리	계 1 반	67~134~850		광산리	광산1리	계 1 반	67~134~850		
			2	118~199, 213~256				2	118~199, 213~256		
		광산2리	계 1 반	492~515			광산2리	계 1 반	492~515		
		2	440~481			2	440~481				
	광산3리	광산3리	계 1 반	603~641		광산3리	광산3리	계 1 반	603~641		
			2	642~984				2	642~984		
		명천리	명천1리	계 1 반			1~229	명천리	명천1리	계 1 반	1~229
		2	230~630			2	230~630				
	명천2리	명천2리	계 1 반	230~1036		명천2리	명천2리	계 1 반	230~1036		
			2	812~1062				2	812~1062		
			3	750~784, 231~537				3	750~784, 231~537		
	어은리	어은1리	어은1리	계 1 반		294~350	어은리	어은1리	어은1리	계 1 반	294~350
				2		351~370				2	351~370
		어은2리	어은2리	계 1 반		447~720		어은2리	어은2리	계 1 반	447~720
				2		495~532				2	495~532
		3	746~830			3	746~830				
		4	831~891			4	831~891				
	후평리	후평1리	후평1리	계 1 반		203~355	후평리	후평1리	후평1리	계 1 반	203~355
				2		384~430				2	384~430
				3		142~149				3	142~149
				4		1101~1248, 산64~1263				4	1101~1248, 산64~1263
		후평2리	계 1 반	734~931, 611~733		후평2리		계 1 반	734~931, 611~733		
		2	345~610			2	345~610				
	봉두리	봉두리	계 1 반	959~1040		봉두리	봉두리	계 1 반	959~1040		
	무학리	무학1리	무학1리	계 1 반		111~180	무학리	무학1리	무학1리	계 1 반	111~180
				2		911~969				2	911~969
		무학2리	무학2리	계 1 반		1285~1785		무학2리	무학2리	계 1 반	1285~1785
			2	1127~1284		2			1127~1284		
	3	710~729		3	710~729						
	4	442~605		4	442~605						
염천리	염천리	계 1 반	21~56	염천리	계 1 반	21~56					
		2	331~348		2	331~348					
		3	640~682		3	640~682					
		4	1422~1456		4	1422~1456					
		5	811~870		5	811~870					
		6	992~1212		6	992~1212					
		7	1066~1087		7	1066~1087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위치)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성주군 <u>금수면 사더래길</u> 144일원에 둔다.	제2조(구성 및 위치) ② ----- ----- <u>금수강산면</u> ----- -----.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성주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성주군 <u>금수면 성주로 190</u> 3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 <u>금수강산면</u> -----.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u>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성주군청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읍·면의 사무소</u> ----- -----.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  
----- 읍·면의 사무소 -----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b>명 칭</b>	<b>위 치</b>	<b>관 할 구 역</b>	<b>명 칭</b>	<b>위 치</b>	<b>관 할 구 역</b>
" <u>금수지소</u>	성주군 <u>금수면</u> 성주로 1902	<u>금수면</u> 일원	" <u>금수강산지소</u>	성주군 <u>금수강산면</u> 성주로 1902	<u>금수강산면</u> 일원
<u>금수면</u> <u>무학보건진료소</u>	성주군 <u>금수면</u> 무학3길 24	후평1,2리,봉두1,2리, 무학1,2리,영천리	<u>금수강산면</u> <u>무학보건진료소</u>	성주군 <u>금수강산면</u> 무학3길 24	-----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시설명	구분	규격	사용기준	기준인원 차량	사용료		비고	시설명	구분	규격	사용기준	기준인원 차량	사용료		비고
					정수기	비수기							정수기	비수기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오토캠핑장	6m x 7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금수강산문화공원 야영장	오토캠핑장	6m x 7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8m x 9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8m x 9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30,000	25,000	
		10m x 10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10m x 10m	1면/1일	5인/1대	35,000	30,000	
	캠핑사이트	6m x 7m	1면/1일	5인/1대	20,000	15,000			캠핑사이트	6m x 7m	1면/1일	5인/1대	20,000	15,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8m x 10m	1면/1일	5인/1대	25,000	20,000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명	리장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읍 면	리 명	리장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u>금수면</u>	<u>광산리</u>	1	광산1리		<u>금수강산면</u>	<u>광산리</u>	1	광산1리	
		1	광산2리				1	광산2리	
		1	광산3리				1	광산3리	
	<u>명천리</u>	1	명천1리			1	명천1리		
		1	명천2리			1	명천2리		
		1	어은1리			1	어은1리		
	<u>어은리</u>	1	어은2리			1	어은2리		
		1	후평1리			1	후평1리		
	<u>후평리</u>	1	후평2리			1	후평2리		
		1	봉두리			1	봉두리		
	<u>봉두리</u>	1	무학1리			1	무학1리		
		1	무학2리			1	무학2리		
	<u>영천리</u>	1	영천리			1	영천리		

**관련법령 발췌**

**◆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련 규정(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내용 및 관련조문

- 행정구역 명칭변경(금수면 → 금수강산면)
  - 리의 명칭 뿐만 아니라 읍·면의 명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조 제2조)
  - 행정구역 명칭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별표)

#### 나. 비용 발생요인

- 금수면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

### 2. 비용 추계의 전제

- ‘금수’ 명칭이 들어간 각종 시설물 교체비용 지원
  - 도로표지판, 관광안내도 등

### 3. 비용 추계의 결과 : 사업비 115,5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예산확보	0	-	-	-	-	0
	소계(a)	0	-	-	-	-	0
세출	○ 명칭변경 홍보	3,000	-	-	-	-	3,000
	○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15,000	-	-	-	-	15,000
	○ 관광안내판 교체	30,000	-	-	-	-	30,000
	○ 문화재안내판 교체	10,000	-	-	-	-	10,000
	○ 버스 승강장 안내판, 버스시간표	4,000	-	-	-	-	4,000
	○ 금수보건지소 간판 정비	3,500	-	-	-	-	3,500
	○ 현판 및 안내판 정비	50,000	-	-	-	-	50,000
	소계(b)	115,500	-	-	-	-	115,500
□ 총 비용		115,500	-	-	-	-	115,500

4. 재원조달방안 : 준비 100%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	-	-	-	-	-
	도비	-	-	-	-	-	-
준비	일반회계	115,500	-	-	-	-	115,5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15,500	-	-	-	-	115,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주군수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 의견청취 방법 개정 (안 제7조)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횡수 마련 (안 제14조의3)
-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 용어 개정 (안 제15조)
- 라. 성장관리계획 용어 개정 (안 제17조의2)
- 마. 개발행위 준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개정 (안 제27조)
- 바.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안 제52조)
- 사.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 (안 제54조)
- 아. 별표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3 외)
  - 국토계획법 위임내용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23호 교정시설, 24호 국방·군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안 별표27)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규제심사 : 원안가결 [기획예산실-5120(2024.04.30.)]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14395(2024.03.19.)]
-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4.05.02. ~ 05.22.)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을 “청취하기 위하여”로, “군 공보나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14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3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횡수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제15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로, “육상어류양식장을”을 “양식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을 “경우로서”로, “형질 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를 “따라”로, “건폐율은 60퍼센트”를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4조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카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러목 및 머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 시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 시설”로 한다.

【별표 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을 “교정시설”로 한다.

【별표 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마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라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자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며,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별표 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차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해당하는 것을”을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

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으로 한다.

【별표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아목(3)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동호 다목”을 “다목”으로, “해당하는”을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자목 중 “동호”를 “동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으로,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을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으로 한다.

【별표 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동시행령 별표 1”을 “(같은 표”로,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정공장
- 2) 식품공장
-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타목 및 파목을 각각 타목, 파목 및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23호라목”을 “제23호의2”로 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별표 18 제2호자목(1) 내지 (4)”를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 중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를 “농어촌도로”로 한다.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참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19.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소,돼지만 해당한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부칙<조례 제2307호, 2019.10.10.>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의제를 포함한다)를 신청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생략)</p> <p>②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u>청취하고자 할 때에는</u> <u>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u> <u>군 공보나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u> <u>두 이상의 일간신문에</u> <u>게재하고,</u> <u>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u> <u>군 홈페이지에</u> <u>공고하여</u> <u>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③·④ (생략)</p> <p>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p>	<p>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청취하기 위하여</u> ----- <u>다음의 각 호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u> ----- ----- ----- ----- -----.</p> <p>1. <u>군 공보나 두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u></p> <p>2. <u>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u></p> <p>3. <u>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p>

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 2. 공작물의 설치
  - 가.·나. (생 략)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 제한없음
-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 양식장은 -----

3.·4. (생략)

5. 토지분할

가. (생략)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 마. (생략)

6. (생략)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생략)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2.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준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준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

다. ~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장관리계획-----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준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  
-----  
-----  
-----  
-----.

1.-----  
-----주택법 제15조-----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10. (생략)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② (생략)

2.-----  
-----주택법 제15조-----  
-----  
---

3. ~ 7. (현행과 같음)

8.-----  
-----경우로서-----  
-----  
-----

-----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2조(건폐율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략)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 6.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 ----- 따라 -----

-----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 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⑨ (생략)

-----  
 -----  
 -----  
 -----  
 -----  
 ----- 140퍼센트 -----.

⑥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 되, <u>유스호스텔</u>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및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p>	<p>2. ----- ----- -----</p> <p>사. ----- -----<u>유스호스텔</u>----- ----- ----- -----</p> <p>카. ----- ----- ----- ----- ----- -----</p> <p>(3) ----- ----- ----- ----- -----<u>「물환경보전법」</u>----- ----- -----</p>



<p>다)</p> <p>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u>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u>는 것</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lt;신 설&gt;</p> <p>거. · 너. (생 략) &lt;신 설&gt;</p>	<p>과. ----- ----- -- <u>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u>른 시설과 비슷한 -----</p> <p>하. ----- ----- <u>교정시설</u></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 <u>호의2의 국방·군사시설</u></p> <p>너. · 더. (현행 거목 및 너목과 같음)</p> <p>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u>29호의 야영장 시설</u></p>
---	--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u>같은 표 제2 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u>되, <u>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u>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p> <p>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p>	<p>2. ----- -----</p> <p>바. ----- ----- <u>유스호스텔</u> ----- ----- ----- -----</p> <p>과. -----</p>

<p>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u>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u> 해당하는 것</p> <p>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lt;신 설&gt;</p> <p>거. · 너. (생 략) &lt;신 설&gt;</p>	<p>----- -- <u>마목부터 사목까지의</u>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u>마목부터 사목까지의</u>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p> <p>하. ----- ----- <u>교정시설</u></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 너. · 더. (현행 거목 및 너목과 같음)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u>야영장 시설</u></p>
--	--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u>제1호마목에</u>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u>제1호아목에</u>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u></p>	<p>2. ----- -----</p> <p>다. ----- ----- <u>제1호바목</u> ----- -----</p> <p>마. ----- ----- ----- <u>제1호자목</u> ----- -----</p> <p>바. ----- ----- <u>교정시설</u></p>

<p>&lt;신 설&gt;</p> <p>사.·안. (생략)</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p> <p>안.·자.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p>
--------------------------------------	---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p>	<p>2. -----</p> <p>-----</p> <p>마. -----</p> <p>---- <u>교정시설</u></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u></p>	<p>2. -----</p> <p>-----</p> <p>마. -----</p> <p>---- <u>교정시설</u></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u></p>	<p>2. -----</p> <p>-----</p> <p>마. -----</p> <p>---- <u>교정시설</u></p>

<p>&lt;신 설&gt;</p> <p>바. (생략)</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p> <p>사. (현행 바목과 같음)</p>
-----------------------------------	---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u></p> <p>&lt;신 설&gt;</p> <p>마.·바. (생략)</p>	<p>2. -----</p> <p>-----</p> <p>라. -----</p> <p>---- <u>교정시설</u></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p> <p>바.·사.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p> <p>&lt;신 설&gt;</p> <p>차. (생략)</p>	<p>2. -----</p> <p>-----</p> <p>자. -----</p> <p>----- <u>교정시설</u></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p> <p>카. (현행 차목과 같음)</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u>&lt;신 설&gt;</u>  파.·하. (생략) <u>&lt;신 설&gt;</u>	2. ----- ----- 자. ----- ----- <u>수련시설</u>  타. ----- ----- <u>교정시설</u>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u>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u> 하.·거. (현행 파목 및 하목과 같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u>29호의 야영장 시설</u>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군사 시설</u> <u>&lt;신 설&gt;</u>  사. (생략)	2. ----- ----- 바. ----- ----- <u>교정시설</u>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u>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u> 아. (현행 사목과 같음)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  
-----  
-----  
-----  
-----  
-----  
-----  
-----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  
-----  
-----  
-----  
-----  
-----

타. -----  
-----  
--- 다목 -----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u>동호</u> 가목 및 <u>마목 내지 아목에</u> 해당하는 것	2. ----- ----- ----- 자. ----- ----- -- <u>동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u> <u>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u> --- <u>마목부터 사목까지의</u> <u>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u> -----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u>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u> 중 <u>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u>	2. ----- ----- ----- 아. ----- ----- <u>수련시설</u> 자. ----- ----- ( <u>같은 표</u> ----- ----- ----- - <u>다음</u>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  
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  
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  
-----  
-----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4)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  
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  
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삭 제>

<삭 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  
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  
지에 해당하는 것

<신 설>

<삭 제>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9호의 야영장 시설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u></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u></p> <p>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u>교정 및 국방·군사시설</u> &lt;신 설&gt;</p> <p>카·타·파. (생 략)</p> <p>&lt;신 설&gt;</p>	<p>2. ----- -----</p> <p>바. ----- ----- 수련시설</p> <p>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u></p> <p>차. ----- ----- 교정시설</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2의 <u>국방·군사시설</u></p> <p>타·파·하. (현행 카목, 타목, 파목과 같음)</p> <p>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9호의 <u>야영장 시설</u></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p>	<p>2. -----</p>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자연공원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  
제23호의2-----  
-----  
-----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 ----- -----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u>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 다)</u></p> <p>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u>별표 18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lt;신 설&gt;</p> <p>파. (생 략)</p> <p>&lt;신 설&gt;</p>	<p>자. ----- ----- <u>수련시설</u></p> <p>카. ----- ----- ----- ----- <u>별표 15 제2호자목(1)부터 (4)까지</u>-----</p> <p>파. 「건축법 시행령」 <u>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u></p> <p>하. (현행 과목과 같음)</p> <p>거. 「건축법 시행령」 <u>별표 1 제 29호의 야영장 시설</u></p>
--	---

□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현 행	개 정 안
<p>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p> <p>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p>	<p>1. ----- ----- ----- ----- -----.</p> <p>가. -----</p>

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거리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가. 발전시설이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주요도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없는 등 피해가 현저히 낮다고 판

-----  
-----  
----- 농어촌도로 -----  
-----  
-----

3. ----- 제1호의 규정 -----  
-----  
-----  
-----  
-----  
-----

나.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4. 3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단되는 경우

나.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및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2019.12.31.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소, 돼지만 해당한다)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가 아래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음

- 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 2) 성주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주목적대로 1년 이상 이용한 경우

**관련법령 발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7조 관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 정보체계
  -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14조의3조 관련)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 관련법령 발췌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15조 관련)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법령 발취**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관련법령 발취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17조의2 관련)

####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27조 관련)

####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취**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법령 발취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 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2조 관련)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발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안 제54조 관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2022. 1. 28., 2023. 3. 21.>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 ~6.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2023. 7. 1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안 도시계획조례 별표 관련)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 라. 작성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년 5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1.7.20.)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명확하게 정의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5조)
- 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4조의4, 제7조제3항)
  -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군수의 책무, 불법촬영장비 대응체계 마련 및 점검장비 대여조항 등 신설
- 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대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1」 반영
- 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12조)
- 마.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 제18조 및 별표 1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성주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으로,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을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으로, “공중화장실등을 항상”을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으로, “편의를”을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 ①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붙이거나”를 “붙이는 등”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

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할 것”으로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

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중전의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u>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u>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u>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u>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u>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u>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u>제2항</u>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u>제2항</u> 제4호	5	10	2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u>제3항</u>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략)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성주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lt;신 설&gt;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p>	<p>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p>

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는 -----  
-----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  
-----  
-----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 할 것.
2. ----- 붙이는 등 -----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삭 제>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  
-----  
-----.

-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

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

1. -----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

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  
-----.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 비치·제공할 것.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관련법령 발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7.20.>
-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 제9조(개방화장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상벨 설치 비용은 개소당 2,000천원 이내로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비상벨 설치비용이 개소당 2,000천원 이내로 예상되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임.

##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4. 6. 7.(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금수면 주민들의 명칭 변경 건의에 따라 현 ‘금수면’의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나. 리의 명칭 뿐만 아니라 읍·면의 명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제1조, 제2조)

### 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 행정구역 명칭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별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제2회 추경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 5. 7.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4421(2024. 4. 15.))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18426(2024. 4. 9.))

### 바. 비용추계서 : 붙임

####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읍·면의 명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면’에서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 의견청취 방법 개정 (안 제7조)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횡수 마련 (안 제14조의3)
-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내 용어 개정 (안 제15조)
- 라. 성장관리계획 용어 개정 (안 제17조의2)
- 마. 개발행위 준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개정 (안 제27조)
- 바.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안 제52조)
- 사.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 (안 제54조)
- 아. 별표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3 외)
  - 국토계획법 위임내용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23호 교정시설, 24호 국방·군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자.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안 별표27)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규제심사 : 원안가결 [기획예산실-5120(2024.04.30.)]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14395(2024.03.19.)]
-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예고기간 : '24.05.02. ~ 05.22.)
-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을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1.7.20.)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명확하게 정의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5조)
- 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4조의4, 제7조제3항)
  -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군수의 책무, 불법촬영장비 대응체계 마련 및 점검 장비 대여조항 등 신설
- 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 지정여부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종류 및 설치 댓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1」 반영
- 라.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12조)
- 마.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16조, 제18조 및 별표 1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방화장실의 경우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며,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